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[별지 제40호서식]

현 행 범 인 인 수 서

피 의 자	성명	()
	주민등록번호	(세)
	직업	
	주거	
변 호 인		

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「형사소송법」 제213조제1항에 따라 위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

. . .

(기 관 명)

특별사법경찰관리 ㊞

체 포 한 일 시		년 월 일 시 분
체 포 한 장 소		
체포자	성 명	
	주민등록번호	
	주 거	
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		
인 수 한 일 시		년 월 일 시 분
인 수 한 장 소		
인 치 한 일 시		년 월 일 시 분
인 치 한 장 소		
구 금 한 일 시		년 월 일 시 분
구 금 한 장 소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